

영등포구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7.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56호로 2011년 6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제1항)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7조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현행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붙여 쓰기를 한 바, 이는 위원회 등의 이름은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한 것임.
-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을 수정한바 이는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면서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정한 사항이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로 한 것은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 법제처 규정에 따라 약칭 사항을 삭제한 것임.
- 안 제4조제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 바 이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짐.

- 위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정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을 규정하여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개정임.
-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적정하며 본 개정안의 검토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4.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종합심의회 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제36조제6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외부 법률 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외부법률전문가 외에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